

민원

민원질의응답·답변원문

HOME > 민원 > 민원질의응답·답변원문

민원

- 민원 소개
- 민원 신청
- 민원질의응답·답변원문**
- 소극행정 신고센터
- 갑질피해 신고센터

총 아플라톡신의 기타식품 정의

2019.06.30 15:06:00

총 아플라톡신 대상식품 중 기타식품은 어떤 식품을 말하나요?

A

1. 안녕하세요?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.

가.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(고시 제2018-74호, 2018.10.12.)에서는 식물성 원료 및 기타식품에 총 아플라톡신 기준(15.0 ug/kg 이하, 61은 10.0 ug/kg 이하)을 설정하고 있습니다.

나. 이때 '기타식품'이라 함은 영양용 조제식, 성장기용 조제식, 영·유아용 곡류조제식, 기타 영·유아식을 제외한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제5.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가공식품(스금, 쌀풀 제외)입니다.

2.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(1577-1255)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.

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(☎ 1577-1255)
관련법령 식품위생법(제7조(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))

콘텐츠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

목록

개인정보처리방침 | 이용약관 | 사이트유지신고 | 뷰어다운로드 | 시각장애인 이용안내 | 전자우편무단수집거부 | 모바일 이용안내 | 유관사이트 바로가기

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
정부민원안내 콜센터 (국민안) 110 / 시스템관련 이용안내 : 1600-8172(대표번호) / 070-4266-7797(일반전화) **상담안내 09:00~18:00(평일)**
COPYRIGHT 2015. 국민권익위원회의 All Rights Reserved.